

2026년 공능유적본부(경북공관리소)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(4차)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

2026년도 공능유적본부(경북공관리소)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(4차)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15.
공능유적본부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예정분야	직 종	최종 합격자 (응시번호+휴대전화 뒷자리)
조리원	축탁직	적격자 없음
사무원	공무직	09.(2962)
직영소방원 다급	공무직	06.(1788)
매수표원	공무직	02.(2709), 05.(5602)

※ 예비합격자(3): 사무원 22.(3518), 매수표원 10.(9068), 12.(8052)

2. 채용 예정일 : 2026. 7. 1.

3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안내

최종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북공관리소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6. 6. 23.(화)까지

나. 장 소 : 경북공관리소 사무실(2층)

다. 제출서류

○ 채용신체검사서 (※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가능)

* 국민건강보험공단→건강iN→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정보→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(직장 제출용)
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※ 붙임1 서식 작성)
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(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)
- 병적증명서 1부 (※ 공무원 근로자 중 군 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)
- 사진(반명합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(※ 급여지급용 계좌)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1부(※ 해당자에 한함)
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(※ 붙임2 서식 작성)

4. 공지사항

- 가. 위 제출일시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‘공무원임용령’ 제11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합격은 자동적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 통보 및 임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
 - 채용신체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결격사유 확인 시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공관리소 인사담당(02-3700-39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2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 끝.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공능유적본부 공무원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3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**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**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공능유적본부장 귀하